

법률에 의해 출입
허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보조건의 동반 출입에 대하여



NPO MAMIE

보조견이란

보조견은 눈이나 귀, 손과 발에 장애가 있는 분을 돕기 위해 신체장애인 보조견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훈련을 받고 인증을 받은 개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 등에서는 보조견을 동반한 이용이 법률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견은 맹도견·개호견·청도견의 총칭입니다

맹도견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개



- 단차를 알려준다
- 길모퉁이를 알려준다
- 장애물을 피하는 등

개호견
손발 등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일상 생활에서의
동작을 돕는 개



- 떨어뜨린 것을 줍는다
- 긴급 시에 휴대폰을 찾아 가지고 온다
- 문 열고 닫기 등
(각각의 요청에 따라 역할이 다름)

청도견
청각 장애인의 생활에서
필요한 몇 가지 소리를
전달해 주는 개



- 인터폰
- 이름을 부르는 소리
- 화재경보기 등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는 어디든 동반 가능

음식점



임대주택/분양 맨션



의료기관



편의점/슈퍼마켓



숙박시설



직장



공공 교통 기관
택시



버스



전철



비행기



보조건의 동반 출입은 “권리 보장”

보조건의 동반 출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보조조건과 생활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안경을 쓴다거나 다리가 골절되어 목발을 짚는다거나 장애 지원을 위해 보조조건과 생활한다. 이 모든 것들이 개개인이 선택한 생활의 수단입니다. 장애의 유무와 관계 없이 누구나 쾌적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당부 말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라는 한 마디

보조견과 함께 있어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곤란해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라고 말을 걸거나 글을 적어 보여 주면서 소통해 주십시오.

보조견에게는 친절한 무시

보조견은 사용자의 지시가 매우 중요하므로 보조견에게 말을 걸거나 계속 쳐다보거나 만지는 등 보조견의 주위가 산만해질 수 있는 행동은 삼갑시다.

뭔가 알게 된 것이 있을 때

보조견이 길을 막고 있거나 통로 쪽으로 꼬리가 나와 있는 등 사용자가 상황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용자에게 알려 주십시오.

시설 등에서의 이용 거부를 발견했을 때

보조견에 대해서나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설 등에서 이용 거부를 당하는 사용자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법률로도 인정되어 있는 것, 안심하고 출입을 허용해도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보조견의 안전과 안심

◆ 보조견과 사용자가 함께 심사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보조견 사용자>

보조견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인증



심사에 통과된 사용자와 보조견만이 시설 등의 이용이 인정됨.

◆ 보조견 사용자는 보조견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수의사가 정기 건강 진단, 예방 접종, 기생충 구제 등

위생 관리:목욕, 빗질, 털 빠짐 방지를 위한 매너 코트·약간 큰 케이프 착용 등

행동 관리:적절한 장소에서 배설, 짖지 않기·물지 않기·함부로 활지 않을 것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양질의 보조견을 육성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가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 시설 등은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의:보조견은 인증을 받은 “맹도견””개조견””청도견”의 총칭입니다.

훈련과 인증:인증된 훈련 사업자가 장애가 있는 분의 상황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양질의 보조견을 육성하여 지정된 법인을 통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유저):보조견을 동반하여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는 보조견인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스스로 보조견의 행동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조견의 몸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등의 이용: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는 사용자가 보조견을 동반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차별 해소법

장애의 유무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서로 인격이나 개성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 “부당한 차별적 대우”나 “합리적 배려의 미제공”이란 차별 해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차별적 대우: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하는 행위

합리적 배려:장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려를 요구하는 의사 표시가 있었을 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장벽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배려

문의·추가 정보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 ▶ 신체장애인 보조견(법률, 홍보 등)
- ▶ 보조견에 관한 상담·문의처
각 도도부현·정령지정도시·중핵시 장애 복지 담당과



◆ 보조견 사용자의 대응 방법(사업자용)(동영상)



◆ 안내 책자·계몽 스티커

보조견의 안내 전단과 보급 계몽용 스티커는 도도부현·정령지정도시·중핵시의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담당 창구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담당 창구로 연락해 주십시오.

